

의안번호	제2835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8. 27.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5호
----------	--------

제출연월일: 2024. 8. 27.

제출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옥내급수관”, “개량”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근거 신설(안 제38조)

다. 중수도시설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의3, 제6조의4)

-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중복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2025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복지지원과-22918호(2024. 6. 7.)]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대상) 제1항 ⇒ 조례 개정 사항에 미 포함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대상) 제1항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제 37조(요금 등의 감면 대상) 제1항의 요금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불수용 ⇒ 요금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사항으로 요금감면 대상 확대는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등의 감면대상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 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49호
  - 가) 예고기간: 2024. 5. 30. ~ 6. 19.(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 를 “「수도법」 제21조, 같은 법 제38조” 로 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8.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
  - 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
  - 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다만,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정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

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

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삭 제>

제6조의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 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 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

<삭 제>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 ·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 ·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다만, 건축물대장 상 주택 부분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38조

나. 비용발생 요인: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다. 소요예산: 30,000천 원(연간)

- 일반운영비(수선비): 20가구×1,500천 원(도비 30%, 군비 70%)

※ 가구당 최대지원금액 1,5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추정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립

**□ 수도법**

**제2조(책무)**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은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등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